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6 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 송옥주・이병진・정성호

박 정・김성환・이수진

김재원 · 노종면 · 한정애

박해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,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·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「병역법 시행령」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그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 「병역법 시행령」에 따른 병역 신고·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·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,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, 병역에 관하여 신고·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

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병역에 관한 신고·출원)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다.
 -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, 가족 중 성년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수 있다.

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4조의2(권한 없는 자의 신고·출원)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5조의2(병역에 관한 신고・출
	원)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
	출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
	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	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
	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
	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
	거나 구술로 할 수 있다.
	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
	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
	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
	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
	대리인이나 세대주, 가족 중 성
	년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
	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84조의2(권한 없는 자의 신고
	·출원) 제5조의2제2항을 위반
	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
	출원을 할 권한이 없는 자가
	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1
	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
	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